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638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8,154,390원, 지방교육세 9,185,030원, 농어촌특별세 4,601,0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B교회는 1990년대 초반 [redacted]시 C 잡종지 374㎡ 및 D 잡종지(당초 지목이 '전'이었으나, 2015. 12. 7. E, F, G, H, I, J, K, L, M 소재 토지와 합병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다.) 9,416㎡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3층 청소년 수련시설 1층 1,834㎡(식당, 강의실, 사무실), 2층 892.55㎡(생활관), 3층 775.39㎡(생활관)을 신축하여 1996. 1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나. 위 교회는 2000. 5. 17. N 잡종지 177㎡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8. 5. 원고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5. 15. 주사무소를 현재 원고 법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다. 위 교회는 위 각 토지 지상에 2014. 8. 11.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기타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1층 1,857.9㎡, 2층 1,840.8㎡, 3층 838.18㎡(이하 '선행건물'이라고 한다)로 위 가.항 기재 건물을 증축한 후 2015. 11. 26. 위 각 토지와 함께 원고 법인에게 증여하였다.

라. 원고 법인은 교회 신도가 늘어나 선행건물 수용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14. 12. 30.에는 인근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제1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5.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4. 28.에는 역시 선행건물 인근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제2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제3토지 및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과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각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1]에 따라 취득세를,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2)[2]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3]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각 면제받았다.

마. 피고는 2019. 7. 26.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4] 이유로 취득세 108,154,390원, 지방교육세 9,185,030원, 농어촌특별세 4,601,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해당 용도 직접 사용의 의미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분조항'이라고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 사용 여부나 건물·시설의 존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4339 판결 참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한다.
3) 농어촌특별세는 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본문 2의 가.항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조).

나.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다. 입증책임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당초의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단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규정의 형식상 본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을 먼저 나열하되, 단서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규정과 구 지방세법 제292조를 종합하면, 조문의 해석상 일단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된 이후 해당 부동산이 당초의 비과세 취지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시 재조사하여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이 당초의 부동산 취득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과세관청이 비과세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동산 등의 일반적인 취득에 따른 본래의 부과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사후적인 부과처분으로 해석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점, ④ 과세요건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해당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과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1165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사유

가. 인정사실

(1) 세무 공무원이 출장 조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16. 5. 31. 제3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제1 및 3건물의 용도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로 바뀌었다.

(2) 제1건물에는 'O' 간판이, 제2건물에는 'P' 간판이, 제3건물에는 'Q' 간판이 각 부착되어 있다.

(3) 제1 내지 3건물은 평소에는 설교대, 의자, 선풍기 등 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매년 여름과 겨울 원고 법인의 수련회 기간에만 약 1,500명 신도들의 수련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4) 피고 담당 공무원이 2019. 4. 25. 제1 내지 3건물을 출장 조사한 결과, ① 공장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②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③ 내부 비품에는 먼지만 쌓여 있고, ④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⑤ 전등에 불이 안 켜지는 곳도 있었으며, ⑥ 벽지나 페인트칠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5) 제3건물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제1건물의 전기사용계약은 원고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5. 12. 해지되었으며, 원고 법인이 제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경부터 3년 뒤인 2018. 5.경까지 사이에 비수련회 기간의 월간 최대 전기사용량은 34㎾h에 불과하나, 하계 수련회 기간 최대 사용량은 1,560㎾h이고, 동계 수련회 기간 최대 사용량은 2,670㎾h이다.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내지 갑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갑11호증의 2,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가 선결문제이다. 즉 피고가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즉,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하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 아니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이하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 중에 하나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련회 기간 제2건물이 수련회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고, 제1 및 3건물은 주간에만 보조적으로 수련회에 사용되었으며, 신도들은 선행건물에서 수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련회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품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수련회에 꼭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4.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7

부 동 산 목 록

1. [redacted]시 R 공장용지 754㎡

2. 위 지상 철골조 아이소판넬지붕 단층공장 328.04㎡

3. S 잡종지 425㎡

4.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5㎡

5. T 공장용지 796㎡

6.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390㎡. 끝.